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5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김주영 · 윤종균
허성무 · 이병진 · 허영
박홍배 · 정춘생 · 윤후덕
서영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,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·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, 직무·권한·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

이에 「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」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,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·권한·의무·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, 「근로기준법」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,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·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(안 제101조·제104조 개정 및 제102조·

제102조의2·제103조·제105조 삭제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930호) 및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92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또는 근로감독관”을 “또는 「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감독관”으로 한다.

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1조(감독 기관) 근로감독관의 권한·의무 등에 관하여는 「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2조,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4조(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)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.

제105조를 삭제한다.

제110조제1호 중 “제104조제2항을”을 “제104조를”로 한다.

제114조제1호 중 “제95조, 제100조 및 제103조”를 “제95조 및 제100조”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보고, 출석의 의무)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·「노동위원회법」에 따른 노동위원회(이하 “노동위원회”라 한다)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.	제13조(보고, 출석의 의무) ----- ----- ----- ----- 또는 「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감독관----- --.
제101조(감독 기관)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.	제101조(감독 기관) 근로감독관의 권한·의무 등에 관하여는 「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근로감독관의 자격, 임면(任免),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102조(근로감독관의 권한)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, 기숙사,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(尋問)할 수 있다.	<삭 제>
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	

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
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
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
하여 검진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
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
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
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
지령서(檢診指令書)를 제시하여
야 한다.

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
지령서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범
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.

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
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
에 관하여 「사법경찰관리의 직
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
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
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
한다.

제102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①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
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
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
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
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

<삭 제>

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
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
요청할 수 있다.

1.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
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
자료

2. 「고용보험법」 제13조 및
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
관한 신고자료

3.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
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
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
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
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
등을 면제한다.

제103조(근로감독관의 의무) 근로
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
을 엄수하여야 한다. 근로감독
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
다.

제104조(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)

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

<삭 제>

제104조(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)

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

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.

제105조(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)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, 서류의 제출,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. 다만,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0조, 제22조제1항, 제26조, 제50조, 제51조의2제2항, 제52조제2항제1호, 제53조제1항 · 제2항, 같은 조 제4항 본문 · 제7항, 제54조, 제55조, 제59조제2항, 제60조제1항 · 제2항 ·

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.

<삭 제>

제110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-----

제4항 및 제5항, 제64조제1항, 제69조, 제70조제1항·제2항, 제71조,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75조,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, 제82조, 제83조 및 <u>제104조제2항을</u> 위반한 자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제104조를</u>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1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14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
1. 제6조, 제16조, 제17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제2항, 제47조, 제53조제4항 단서, 제67조제1항·제3항, 제70조제3항, 제73조, 제74조제6항, 제77조, 제94조, <u>제95조, 제100조</u> 및 <u>제103조</u> 를 위반한 자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95조 및 제100조</u>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11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, 방해</u>	<u><삭 제></u>

<u>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</u> <u>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</u> <u>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·서</u> <u>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</u> <u>짓 장부·서류를 제출한 자</u> 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--	------------